「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O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7일 회부
- O 상정일자: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3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복지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2006년 제정된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(복지위원)에서 규정하고 있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것으로,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(2017.10.24.)에 따라 제8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이 부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 - ※ 검토보고서 전문 ····· [붙임 1]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생략」
-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- 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- 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- 붙임 1.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 - 2.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